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75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 사업장의 유사성 판단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제조 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국내복귀지원실 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복귀 개념과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 사업장이 제조업인 경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1항)

- 나.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 외에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 다.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면제 적용대상을 사업장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핵심제조시설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 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조의4)
- 마.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gaehomin@korea.kr
- 팩스 : 044 -203 -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 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